**공동 개발 계약서**

경기도 평택시 진위산단로 75에 등기된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원익 아이피에스와(이하 “갑”이라 한다)와 «거래처(을)주소»에 등기된 본점을 두고 있는 «거래처(을)명» (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개발및개발목적물»에 관한 공동 개발(이하 “본 개발”이라 한다)을 «계약일자»자로 체결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신의와 성실로써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1. **(본 계약의 목적)**

“갑” 및 “을”은 «개발및개발목적물» (이하 “개발목적물”이라 한다)의 공동개발과 관련하여 상호간의 신뢰와 협조의 정신으로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은 이러한 공동 개발에 관한 필요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공동개발” 이라 함은 “본 계약”에 따라 수행되는 «개발및개발목적물» 개발에 대한 연구, ENGINEERING, 분석, 실험, 소프트웨어 제작, 샘플제작 및 성능개선을 포함하는 일체의 연구개발활동을 말한다.
2. “개발목적물”이라 함은 본 계약에 따른 공동개발의 목적대상물로서 양 당사자가 상호 합의한 사양(Specification)을 만족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공정 결과물뿐만 아니라 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실험데이터·자료·보고서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결과물을 말한다.
3.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아이디어, 발명,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상표권 및 MASK WORK, LAYOUT, Software, KNOW-HOW 기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체의 지적창작물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4. “정보”라 함은 본 계약 이행을 위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기술 · 데이터 · 실험자료 · 아이디어 · 사양 · KNOW-HOW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유·무형의 자료와 본 계약을 수행함에 따라 지득하거나 발생된 “개발목적물”의 기능 · 기술 · 데이터 · 실험자료 · 아이디어 · KNOW-HOW · 보고서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유·무형의 자료를 말한다.
5. **(개발 내용 및 기간)**
6. “갑”과 “을”은 “개발목적물”을 공동으로 개발하며 공동개발의 목적, 목표 사양(Target Specification), 개발일정, 내용 및 각 당사자의 역할 등의 상세내역은 별첨 1)의 공동개발 수행계획서와 같다.
7. 본 공동개발에 따른 각 당사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IPS의 역할** | **«거래처(을)명»의 역할** |
| «1.IPS의역할»  «2.IPS의역할»  «3.IPS의역할» | «1.거래처(을)역할»  «2.거래처(을)역할»  «3.거래처(을)역할» |

1. 공동개발 기간은 «계약시작일(발효일)»에서 «계약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동개발 기간의 연장 내지 단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갑”과 “을”의 서면 합의에 의해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2. “을”은 별첨 1)의 공동개발 수행계획서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로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갑”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3. **(개발비)**
4. 양 당사자는 각자가 사업기회를 창출, 확대하기 위해 자신의 위험부담 하에 자율적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것으로, 본 계약에 따른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와 수익을 거두지 못하였다고 하여 당사자 일방이 본 개발을 위해 지출한 어떠한 명목의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거나 어떤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5. 양 당사자가 본 계약의 효율적 이행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개발비 지급의 필요성을 상호 공감하는 경우, “갑”은 자신의 기준과 계산으로 본 계약에 따른 적정한 개발비를 산정하여 “을”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단, “갑”이 개발 완료된 “개발목적물”을 “을”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갑”은 “을”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기(旣) 지급한 개발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매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6. “갑”은 전술한 개발비를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을”이 제공하는 계좌 정보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을”은 본 개발비를 수령함과 동시에 그 수령에 관한 영수증을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본 개발비 이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갑”에게 투자비, 연구비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7. “을”은 개발비를 본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목적으로든 개발비를 본 개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전용해서는 아니 된다.
8. **(정보의 공유 및 교환)**
9. 각 당사자는 본 개발 수행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상호 공개하여 협력하기로 한다. 특히 “을”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중 “갑”에게 공유하는 기술정보(이하 “공유 정보”)에 대하여 “갑”이 충분히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동시에 또는 필요 시 수시로 “갑”의 임직원에게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10. “을”은 분담한 개발의 수행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즉시 “갑”에게 통지하고 그 시험결과를 제공하여야 하며,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11. “갑”이 “을”의 개발과정 및 “공유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 자문과 기술지원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한다. 단, 구체적인 자문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12. “갑”과 “을”은 본 조에 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자료, 정보를 본 개발의 목적 및 상업화에만 사용하며 기타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13. **(시설의 이용)**

“갑”이 본 개발 수행 및 정보 공유를 위해서 “을”의 연구시설의 일부에 대한 사용신청을 하는 경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을 거부하지 않기로 하며 사용조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협의로 정한다.

1. **(진도 보고 등)**
2. “갑” 및 “을”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 정기적 또는 “갑”이 요청하는 경우에 수시로 아래에 기재된 개발 책임자의 주재로 회합을 개최하여 본 개발의 진행상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의 결과에 대해서는 의사록을 2부 작성하여 각 개발책임자의 기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또한, “을”은 “갑”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갑”에게 통보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만약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개발책임자를 변경,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교체 일정을 교체일 최소 2주일 이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후속 개발책임자가 본 개발 수행에 문제가 없도록 적절한 업무 인수인계 등을 취하여야 한다.
3. “갑”의 개발책임자: «개발책임자(갑)»
4. “을”의 개발책임자: «개발책임자(을)»
5. “을”은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3조 제3항에 의한 공동개발기간 종료일 전에 상호 협의에 따라 본 계약에 의한 공동개발의 결과물에 대한 결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만약 당해 평가 결과,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개발의 범위 및 일정 등을 논의할 수 있다.
6. **(제3자와의 공동개발의 제한)**
7. “을”은 본 공동개발 계약 기간 동안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 없이 본 개발과 동일한 개발을 제3자와 공동으로 병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부터 수득해서는 안 된다.
8. “을”이 “갑”의 서면 동의를 받아 제3자와 공동개발 또는 위탁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을”은 “갑”으로부터 취득한 본 개발상의 정보 및 결과물을 “갑”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9. **(성과 및 자산의 귀속)**
10. 본 개발의 성과란 본 개발에 의하여 얻은 성과 중 본 개발의 목적과 직접 관련이 있는 발명, 고안, 의장, 컴퓨터 소프트웨어, 노하우 등 일체의 기술적 성과를 말하며, 별도의 서면 합의가 없는 한 본 개발 일체의 성과는 “갑”에게 단독적으로 귀속한다. 단, 본 개발 이전부터 “을”이 보유하고 있던 기술 또는 본 개발과 관계 없이 “을”이 독립적으로 개발한 기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본 개발을 위해 구입한 실험 설비 일체는 당해 비용을 부담한 당사자의 자산으로 귀속되며, 계약 기간 중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사용하되 개발 종료 혹은 본 계약 해지 시 30일 이내에 원 소유자에게 반환하며, 이때 이전 비용은 사용한 당사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12.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관리)**
13. 본 계약에 따른 공동개발업무 수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지식재산권(개발 진행 중 또는 개발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본 계약 범위 내에서 출원되는 지식재산권을 포함함)은 별도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에게 단독적으로 귀속된다. 만약 “을”이 별도의 협의를 통해 본 개발을 통해 발생된 지적재산권의 공동 소유를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합리적인 소명 자료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은 “을”이 제출한 소명 자료를 분석, 검토하여 그 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4.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 등록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담하며, 당사자 일방이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또는 지식재산권리 확보에 관한 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당해 지식재산권에 관한 단독적인 권리가 귀속된다. 만약 당해 지적재산권의 유지 기간 중 당사자 일방이 그 유지를 포기하거나 유지비 분담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15. “을”은 “개발목적물”의 사용 또는 판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본 계약 체결 전부터 “을”이 보유하고 있던 본 개발 관련 지식재산권 (출원 중 또는 등록 전의 지식재산권을 포함한다)의 무상 실시권(생산, 판매, 사용)을 “갑”에게 허여하여야 하며, “갑”은 사전에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제3자에게 당해 지식재산권의 무상 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다. 다만, “갑”은 “을”이 기(旣) 보유하고 있던 지식재산권을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여함으로써 라이선스료 등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실시권의 허여 조건, 수익 배분 등에 관하여 “을”과 협의하여야 한다.
16. **(개량발명)**

“을”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 종료 후 1년 내에 본 개발의 성과를 개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갑”에게 통지하고, 그 귀속 및 취급에 대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1. **(개발성과의 발표)**

“을”은 본 계약 체결 사실 및 본 개발의 성과를 제3자에게 공지하거나 또는 외부에 발표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내용,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문서로 “갑”에게 통지하여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독점권의 제공)**
2. “을”은 본 계약 기간 및 계약 종료 또는 만료 후 «독점공급기간(년)»년(이하 “독점공급기간”) 간 “개발목적물”을 “갑”에게 독점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갑”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제3자에게 “개발목적물”을 판매하거나 그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3. “을”이 제1항에 위반하여 “갑” 이외의 제3자에게 “개발결과물”을 제조, 용역 제공, 판매.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의 사전 서면동의를 득해야 한다.
4. “을”은 특수관계인 기타 제3자를 통하여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갑” 이외의 제3자에게 제1항 기재 장비의 제작 및 공급과 관련한 업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만약 본 계약 기간 및 계약 만료 후 1년 간 “개발목적물”을 “을”로부터 «개발목적물개수»개 이상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독점공급기간은 만료 이후 추가 1년을 연장하기로 한다. 단, 이 경우에도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구매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갑”에게 “개발목적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6. **(보증)**
7. “갑”과 “을”은 본 계약에 따라 공동 개발된 “개발목적물”의 제조, 사용 및 판매가 제3자가 소유하는 특허, 실용신안, 프로그램 저작권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보증한다. 만약 당사자 일방이 제공한 기술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문제 제기, 클레임 또는 소송 등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당사자는 직접 제3자의 클레임 등을 해결하여야 하며, 그로부터 상대방을 면책시켜야 하고 상대방에게 어떠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을”은 본 개발 수행을 위하여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야 하는 경우, “갑”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당해 지식재산권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야 한다.
9. “을”은 본 개발 시에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제반 조치(하자보수나 유지보수 포함) 및 그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본 공동개발을 위한 “갑”의 필요한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할 것을 보증한다.
10. **(비밀유지)**

“갑”과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자료, 정보, 및 본 개발의 성과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입수한 상대방의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일체의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며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것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또는 공개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갑”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공동개발로 취득한 보고서 및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그 원본, 복사물 등을 광고, 감정, 평가, 기타의 선전목록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1. 상대방으로부터 입수하기 이전에 이미 소유하고 있었던 것
2. 상대방으로부터 입수하기 이전에 이미 공지된 것
3. 상대방으로부터 입수한 후에 자기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고 공지된 것
4. 정당한 권한이 있는 제3자로부터 비밀유지의 의무를 수반하지 않고 입수한 것

만약 본 계약 체결 전(前) 양 당사자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본 비밀유지의무는 당해 비밀유지계약서를 준용한다.

1. **(해제, 해지)**
2. “갑” 및 “을”은 상대방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대방에게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최고하고, 동 최고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 해지 할 수 있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공동개발의 수행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4. 본 계약을 이행하는데 부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5.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첨부된 공동개발 계획을 위반한 때
6. “을”이 제8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위한 경우
7. “갑” 및 “을”은 전항 각호 이외의 누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는 사유로 본 계약을 계속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자가 협의한 후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8. “갑” 또는 “을”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상대방이 입게 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9조 (손해배상)**

“갑” 및 “을”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또는 지연시킬 때에는 그 행위를 야기한 당사자는 그러한 불이행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일체의 손해를 배상함과 동시에 상대방이 요청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0조 (권리양도의 제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문서에 의한 사전 동의가 없으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서 정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21조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언급된 개발범위 이외의 추가개발이나 일부 취소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상호협의에 의하여 관계 조항을 변경 할 수 있다. 계약의 변경은 각 당사자의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문서에 의하며 변경의 효력은 당해 문서에서 별도 정함이 없으면 위 문서에 기명 날인한 날에 발생한다.

**제 22조 (통지)**

1. “갑” 및 “을”은 본 계약에 관한 모든 통지를 문서에 의하여 본 계약 마지막에 기재된 당사자의 본점 소재지로 행한다.
2. 전항의 통지는 본 계약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 23조 (계약의 유효 기간)**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제3조 제3항 또는 별첨 1)의 공동개발수행계획서에 기재된 공동개발기간 동안 유효하며, 제9조 (성과 및 자산의 귀속) 내지 제15조(비밀유지)의 규정은 본 계약 종료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그 효력이 있다.

**제 24조 (계약의 효력발생)**

본 계약은 “갑”과 “을” 양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5조 (준거법)**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계약의 해석에 대한 분쟁은 대한민국 상법 및 민법 등 관계법령이나 일반 상거래 관행에 따라 결정한다.

**제 26조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반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의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분쟁에 대하여는 “갑”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을 제1심 전속적 합의관할로 한다.

**제 27조 (기타 사항)**

1. 본 계약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서 상에 특별히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습에 준한다.
2. 본 계약에 규정된 내용은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서면이나 구두로 합의한 사항을 대체하며, 최종적으로 합의된 내용이다.
3. 영업양수도, 합병,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을”이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계약에 따른 “갑”의 권리와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을”은 사전에 “갑”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본 계약에 따른 개발 성과물에 대한 일체의 지식재산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갑”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 통을 작성하여 “갑” 과 “을”이 기명 날인하고 각자 1통씩 보관하다.

«계약일자»

“갑” 경기도 평택시 진위산단로 75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

대표이사 변 정 우 «인(갑)»

개발책임자: «개발책임자(갑)» «인(갑)개발책임자»

“을” «거래처(을)주소»

주식회사 «거래처(을)명»

대표이사 «대표자(을)명» «인(을)»

개발책임자: «개발책임자(을)» «인(을)개발책임자»

* 별첨서류

1. 공동개발 수행계획서